

입찰 유 의 서

제 1 조 (목적) 이 유의서는 (주)코셋이 행하는 입찰에 있어 당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입찰참가신청)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등에 지정된 기한 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입찰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코셋 소정양식)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등기부등본 1부
4.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5. 대리인 참가시 대표자 위임장 1부
6. 제안견적서 1부
7. 재무제표 1부
8. 청렴계약이행각서 1부

제 3 조 (입찰) ① 입찰참가신청 또는 입찰참가승낙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② 입찰전에 위임장을 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③ 입찰서에 사용하는 인감은 입찰참가신청시에 제출한 인감으로 하여야 한다.

④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는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으로 할 수 없다.

제 4 조 (입찰서의 작성) ① 입찰서는 소정의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총액을 표기하여야 한다.

② 입찰서의 기재사항 중 말소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는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③ 입찰서의 금액표시는 한글로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아라비아숫자를 병기할 수 있다. 이 경우 한글로 기재된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로 기재한 금액에 의한다.

제 5 조 (입찰서의 제출 등) ① 입찰서는 봉합하여 1인 1통만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일단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철회·교환 또는 변경할 수 없다.

제 6 조 (낙찰자의 결정) 제9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한다. 단, 낙찰자가 될 동가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즉시 추점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제 8 조 (경쟁입찰의 성립) 경쟁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서 성립한다.

제 9 조 (입찰의 무효)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3. 입찰서가 소정일시까지 소정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입찰
4. 동일 사항에 대하여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5. 동일 사항에 대하여 타인이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
6. 입찰자의 입찰금액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7.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또는 계약담당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8.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참가신청서 제출한 인감과 다른 인감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한다)
9.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자가 이를 인정한 입찰
10. 제5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소정의 입찰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입찰서의 금액을 아라비아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제 10 조 (관계사항의 숙지) 입찰자는 입찰공고조건, 입찰유의서, 계약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제 11 조 (입찰의 변경 등) ①코셋은 필요한 경우에는 입찰공고 등에 예정된 입찰 또는 개찰의 일시를 변경할 수 있다. 이때에는 그 사유와 변경일시를 입찰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코셋은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서 입찰자 또는 횟수에 제한없이 다시 입찰에 붙일 수 있다.

제 12 조 (계약의 체결) ①낙찰자는 코셋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소정의 서식에 의한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그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계약체결시까지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코셋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법령의 규

정에 의하여 필요한 관계서류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 (계약의 성립) 계약은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계약서를 작성·날인함으로써 확정된다.

제15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구원으로 부터 일정기간 동안의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에서 부정당업자로 제재받은 사실이 있는 자도 또한 같다.

제16조 (하자담보책임기간 등)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납품일로부터 1년으로 하고, 하자보수보증금율은 5%로 한다.

제17조 (기타사항) 입찰공고조건 및 이 입찰유의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의 사항에 대하여는 코셋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